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정혜영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(정혜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

제안년월일 : 2022년 3월 31일 제 안 자: 정혜영 의원 외 8인

> 이호건, 박학동, 노원정, 양순임, 오중균, 이광남, 이인순, 정기혁

1. 제안이유

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등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사항 규정

(안 제2조 제2항)

나. 팀 신설(정책지원팀) 및 의회사무국 소속 팀 사무분장사항을 규정 (안 제3조 제1항,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3. 31.~ 4. 6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직원의 임용, 인사, 상벌, 교육훈련, 후생복지
- 17.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 정활동 지원

제3조제1항 중 "의정팀·의사팀 및 홍보팀"을 "의정팀, 의사팀, 홍보팀, 정책지원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직원의 임용, 인사, 상벌, 교육훈련, 후생복지
- 4. 정책지원팀
 - 가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 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 - 나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・분석 지원
 - 다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 - 라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

- 마. 의원의 공청회 · 세미나 · 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- 바. 의원 교육연수
- 사. 의원연구단체 운영
- 아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 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무국장) ① (생 략)	제2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	②
무를 분장한다.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6.</u> 직원의 임용, 인사, 상벌, 교
	<u>육훈련, 후생복지</u>
<u><신 설></u>	<u>17.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</u>
	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·분석·
	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<u>16</u> . (생 략)	<u>18</u> 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제3조(사무분장) ① 의회의 사무	제3조(사무분장) ①
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	
위하여 <u>의정팀·의사팀 및 홍보</u>	<u>의정팀, 의사팀, 홍보팀,</u>
<u>팀</u> 을 두고, 팀장은 지방행정주	<u> 정책지원팀</u>
사로 보한다.	
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	②
다.	
1. 의정팀	1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	바. 직원의 임용, 인사, 상벌,
에 관한 사항	교육훈련, 후생복지
사. ~ 너. (생 략)	사. ~ 너. (현행과 같음)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정책지원팀

가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 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 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나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 석 지원 다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 원 라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 마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 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바. 의원 교육연수 사. 의원연구단체 운영 아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

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

의정활동 지원